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장기재직휴가의 사용일수 조정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확대시행(총20일)

-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5일 ⇒ 10일(변경)
-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10일 ⇒ 15일(변경)
-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: 20일(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공무원법』 및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2835(2018. 4. 10.)〕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22524(2018. 4. 12.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 : 2018. 4. 12.~ 2018. 5. 2.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1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○ 휴가 일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직원에게는 당초 5일에서 10일, 재직기간 20년 이상 직원에게는 10일에서 15일, 재직기간 30년 이상 직원에게는 20일을 신설하여 휴가일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총 휴가 일수는 누적으로 산정하여 20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. 특별휴가 제도는 도내 23개 시·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휴가 일수는 10일에서 40일까지 차이가 있으며 가장 많은 시·군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20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